

#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
----------	-----

제출년월일 : 2016.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지역연대의 설치 및 목적(안 제4조 ~ 제5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
-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연계와 교류,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12조)

- 15명 이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위원회 개최
- 지역안전망 구축, 아동·여성보호, 시설간 지역연대 등 관련사항 협의·조정

다.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 실무전문가로 협의회 구성 및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 담당

라.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9조)

- 지역사회 안전체계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안전망구축과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기능수행
-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 연구 및 교육지원

마.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제23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업비 지원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의 의무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6.7.~6.27.)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 비규제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일부반영)

개선의견	반영결과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u>성매매</u>,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u>성매매</u>,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아동·여성 <u>안전 확보</u>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u>아동·여성보호를 위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아동여성 <u>안전</u> 관련 사업</li> <li>3. ~ 6. (현행과 같음)</li> </ol>	<p>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아동여성 <u>안전</u> 관련 사업</li> <li>3. ~ 6. (현행과 같음)</li> </ol>

5) 법제심사 : 원안동의

##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평창군 아동·여성안전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평창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2.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 기능은 아동·여성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참여 및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7.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안전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 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아동·여성보호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 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두되, 실무사례협의회 회장은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7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8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19조(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 방안 연구 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제4장 보칙

**제20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7.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20조(사업비의 지원)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연락처	(033) 330 - 2150